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재원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부수용도로 건축되는 주차장이나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쓰이는 부분의 연면적을 부담금 산정 시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시·도지사 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한을 앞당김으로써 대규모개발사업 수립 및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발생에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8조의3, 제9조)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용에 사업별로 연도별 재원 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변경(안 별표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수립을 위하여 기존 “지구(개발)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구역)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 개정(안 제16조의2)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해 주택 건설사업 등과 같이 지하층, 부대시설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산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재입법예고(2024. 9. 12. ~ 10. 23.)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의 제목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해당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를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로, “기본방향”을 “기본방향에과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조달방법”을 “조달방법 또는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하

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통안전시설”을 “교통안전시설의 개선·확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한다.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
방향과 연도별 자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항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후에”를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확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하여”로, “당해”를 “해당”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의”를 “개선대책의”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을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내지 제6항 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한다. 제9조의3의 제목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을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을 “개선대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에”를 “개선대책에”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의”를 “개선대책

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개선대책”으로 한다.

가. 개선대책 이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개선대책 사업수를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또는 개선대책 집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개선대책 사업비용을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9조의5제1항제1호나목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개선대책”으로 한다.

제16조의2제4항제2호다목 중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개선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을 산정할 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를 “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연면적
2.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19조제1호 중 “제7조의2제1항·제2항”을 “법 제7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한다.

별표 2의 「주택법」의 수립시기란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수립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별표 2의 「도시개발법」의 수립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1년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수립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이 영 시행 당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추가하여 변경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수립한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

방향과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이 영 시행 당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추가하여 변경해야 한다.

제3조(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규모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수립시기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같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도시개발법」의 수립시기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같은 법에 따라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u>광역교통개선대책</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①----- <u>광역교통 개선대책</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광역교통개선대책</u> 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u>해당 광역교통 개선대책</u>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5. <u>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u> 에 필요한 <u>재원의 조달</u> 및 분담의 <u>기본방향</u> 에 관한 사항	5. <u>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u> 을 추진하기 위하여 ----- ----- <u>기본방향</u> 에과 <u>연도별</u> <u>재원 투자계획</u>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 ----- -----.
1. <u>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u> 에 필요한 <u>재원의 조달</u> 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	1. ----- ----- <u>조달방법</u> 또는 <u>연도별 투자계획</u> -----

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광역교통개선대책</u> 의 사업기 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 는 경우	3. <u>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 선대책</u> ----- -----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 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 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 발사업은 제외한다.	①----- ----- -----. ----- ----- ----- ----- -----.
1. ~ 4. 삭제	
5. ~ 12. (생략)	5. ~ 12. (현행과 같음)
13. 삭제	
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u>광역 교통개선대책</u> 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14. ----- <u>법 제 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u> ----- --
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u>광 역교통개선대책</u> 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u>광 역교통 개선대책</u> ----- -----.

③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5.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6. (생략)

④ 시·도지사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

1. ~ 4. (현행과 같음)

5. 교통안전시설의 개선·확충 계획-----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과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

⑤-----
-----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 해당 -----
-----.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후에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 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3(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생략)

제9조의4(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절차 등) ① 법

⑥-----
-----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확정통
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역
교통 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
이라 한다)에 관하여 -----

해당 -----
-- 개선대책의 -----

----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
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9조의3(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현행과
같음)

제9조의4(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의 지정 기준·절차 등) ① ---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라 한다)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크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용을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

1. (현행과 같음)

2. -----
----- 개선대책 -----

가. 개선대책 이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개선대책 사업수를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또는 개선대책 집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개선대책 사업비용을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

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
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
분의 50 미만인 경우

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
된 철도 건설사업이 광역
교통개선대책의 준공 예정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다. (생략)

②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6제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
할 때에는 지정을 요청하는 지
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4.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그 이
행 현황

5.·6. (생략)

③ ~ ⑦ (생략)

제9조의5(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
제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7
조의7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

분의 50 미만인 경우

나. 개선대책에 -----
----- 개선
대책의 -----

다.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개선대책 -----

5.·6.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5(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
제 등) ① -----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대책지구 현황

가. (생략)

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2. 3. (생략)

② (생략)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③ (생략)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
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나. (생략)

다.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개선대책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개선대책-----

는 도로 라. (생 략) 3. (생 략) ⑤・⑥ (생 략) ⑦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산정할 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⑧ (생 략) 제19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1. 제6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연면적 2.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업무의 위탁) ----- ----- ----- ----- ----- ----- ----- -----. 1. -----
---	--

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u>제7조의2제1항·제2항</u>에 따라 수립·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검토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및 <u>제7조의2제5항</u>에 따른 <u>광역교통개선대책</u>의 이행 상황 검토 3.·4. (생략)	----- 법 <u>제7조의2제1항·제2항</u>----- ----- ----- 2. ----- ----- --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u>개선대책</u>----- -- 3.·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5050